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960 취득세등부과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15. 4. 16.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11.자 별지1의 제1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과
2014. 4. 14.자 별지1의 제2처분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5. 28.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 6. 25. 피고에게 개업년월일을 2009. 5. 28.자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업·기초화학물제조·부동산업으로, 종목은 건축자재·수산화마그네슘·톨루엔디아민·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9.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1. 11. 23.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을 ■■■■■시로부터 매수하여 각 취득하였다(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개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①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

다.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1.부터 2013.까지의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4. 4. 11. 별지1의 제1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을, 2014. 4. 14. 별지1의 제2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화학에 임대한 것이 아니다.

2)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2009. 7.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화학제품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가 ■■■시에 수용되어 공장건설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이나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3) 원고는 2011. 12.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함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A화학과 2011. 10. 12. 위탁저장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C에 가공품인 계면활성제를 실제로 납품하였는데, 경리직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제품이 아닌 사용료로 기재한 것이고, C 외에도 대광D.K.T



나 캡슐루션 주식회사에 품목을 가공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일부 직원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무보수로 일한 것이고 A화학 직원이 원고의 사업장에 파견형식으로 상주하여 일하였으므로, 적어도 2011. 12.부터는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2, 8 내지 15, 19, 21, 23호증, 을 제10 내지 18호증,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사업자들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관계

A화학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을 대표자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위 D은 원고의 주식 중 70%를, C의 주식 중 70%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축허가

원고는 2010.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①부동산에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증축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3. 2. 25.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3) A화학의 소재지 변경

A화학은 2010. 8. 23. 여수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①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A화학은 2015. 3. 11. 현재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①부동산을 본사 및 제1공장으로, 광양시 E을 제2공장으로 표시하고 있다.



4) 원고의 사업내역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2011. 매출로 임대료수입 45,000,000원을, 2012. 매출로 임대료수입 120,000,000원, 2013. 매출로 임대료수입 122,181,816원과 서비스수입 1,817,600원, 합계 123,999,416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의 수입은 없다.

원고의 2011. 12.부터 2014. 2. 28.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 상호	날짜	품목명	공급가액(원)
C	2011. 12. 30.	제품	45,000,000
	2012. 3. 31.	사용료	30,000,000
	2012. 6. 30.	사용료	30,000,000
	2012. 9. 30.	사용료	30,000,000
	2012. 12. 31.	사용료	30,000,000
	2013. 10. 31.	사용료	10,000,000
	2013. 11. 30.	사용료	10,000,000
	2013. 12. 31.	사용료	10,000,000
	2014. 1. 31.	사용료	10,000,000
	2014. 2. 28.	사용료	10,000,000
	합계		215,000,000
■■■■■	2010. 10. 30.	SC201 외	7,500,000
■■■■■ 주식회사	2013. 11. 30.	PB가공	457,600
	2013. 12. 31.	PB가공	1,300,000
	2014. 1. 31.	PB	1,700,000
	2014. 2. 28.	PB가공	1,700,000
	합계		12,657,600

원고는 2009.부터 2014. 5.경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화학에게 임대하였는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A화학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화학은 이 사건 ①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임차



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이 사건 ①부동산을 본사 및 1공장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 사건 ①부동산은 원고가 아닌 A화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①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이 사건 ①부동산 지상의 건물이나 이 사건 ①부동산에 진출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로에 불과하여, 이 사건 ①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도 원고가 아닌 A화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화학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만을 이 사건 ①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이고, A화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보는 것처럼 A화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장을 증축하려고 한 점까지 보태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건축허가는 장기 미착공으로 취소된 점, 원고가 공장 증축계획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갑 제13, 14호증에 'A화학 진입도로 개설관련 평면도', 'A화학 공장 증축 공사'라고 기재된 점,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A화학의 대주주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자신의 사업을 위한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A화학의 사업을 위한 공장을 증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애초에 A화학의 사업을 위한 공장을 증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수시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2011. 12.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아닌 A화학이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A화학이 증축한 공장 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계면활성제 제조업을 영위할 만한 물적시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 C, A화학 사이에 체결된 위탁저장임가공계약서(갑 제8호증)의 기재는 C가 원고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A화학이 원고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면, 원고가 제품을 가공하여 C에게 납품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 C, A화학은 사실상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소유인 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2011.부터 2013.까지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의 대부분이 임대료수입으로 되어있는 점, C에 품목을 '사용료'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위 임대료수입이 일치하는 점, 위 세금계산서는 매분기 3,000만 원, 매월 1,000만 원 등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발행되어 가공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 C, A화학 사이에 체결된 위탁저장임가공계약대로 원고가 C에게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14. 5.경까지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가 전혀 없어 원고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명의 근로자들(F, G)은 일단 무상으로 근로하고 추후에 보상하기로 하고, A화학 직원 2명(H, I)이 촉매제 제어를 위하여 파견 나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A화학에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희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별지1

제1처분목록

순번	과세대상	세목	납기내금액
1	[redacted]시 J외 2필지 (토지+건물)	취득세	28,140,620원
		농어촌특별세	2,814,060원
		합계	30,954,680원
2	[redacted]시 J외 2필지 (토지+건물)	등록세	28,140,620원
		지방교육세	5,277,720원
		합계	33,418,340원
3	[redacted]시 K외 1필지 (토지)	취득세	1,582,980원
		지방교육세	98,380원
		농어촌특별세	105,520원
		합계	1,786,880원
4	[redacted]시 L (토지)	취득세	1,447,200원
		지방교육세	89,740원
		농어촌특별세	96,470원
		합계	1,633,410원

제2처분목록

순번	과세년도	과세대상	세목	납기내금액
1	2011년도	J (건축물)	재산세	100,880원
			지방교육세	20,180원
			합계	121,060원
2	2012년도	J (건축물)	재산세	102,320원
			지방교육세	20,460원
			합계	122,780원
3	2013년도	J (건축물)	재산세	99,810원
			지방교육세	19,960원
			합계	119,770원
4	2011년도	[redacted]시 M 외 1건	재산세	532,900원
			지방교육세	106,580원
			합계	639,480원 ¹⁾
5	2012년도	[redacted]시 J	재산세	449,990원
			지방교육세	90,000원
			합계	539,990원
6	2013년도	[redacted]시 J	재산세	466,250원
			지방교육세	93,250원
			합계	559,500원

1) 2015. 4.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기재는 1,633,410원이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별지2

부동산 목록

1. ■■■시 J 공장용지 8,311m²
2. ■■■시 N 도로 458m²
3. ■■■시 K 도로 263m²
4. ■■■시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대피소
1층 165.3m²
2층 165.3m²
지층 24.07m²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9.72m²
5. ■■■시 L 답 380m²
6. ■■■시 K 답 326m²
7. ■■■시 O 답 70m² 끝.



별지3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의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



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끝.